

# 다자협상 체제의 새로운 통상의제

- 싱가폴 각료회의와 그 이후 -

김 철 수  
WTO 사무차장

1990년대 이후 세계경제의 흐름을 특징지울 수 있는 가장 큰 현상은 세계경제의 급속한 통합과 이에 따라 각국 경제에서 대외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대되고 있다는 이른바 세계화 현상일 것이다.

편집자 주) WTO 출범이후 최근 국제통상관계에서는 무역과 부패방지 등 새로운 의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와 관련 김철수 WTO 사무차장은 지난 5월 7일 한국무역협회와 세계경제연구원이 서울 롯데호텔에서 주최한 세계무역포럼에 연사로 참석, 오는 12월 싱가포르에서 열릴 제1차 WTO 각료회의에서 환경투자정책 노동 부패방지 등 새로운 아슈들이 다자간 통상체제의 핵심과제로 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본고는 김철수 WTO 사무차장의 주제발표 내용을 게재한 것이다.

이러한 시점에 한국무역협회와 조선일보사 그리고 세계경제연구원이 함께 서울세계무역포럼을 창설하여 세계경제와 통상에 관련된 주요문제들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의 장을 제공해 주고 있는 것은 참으로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아시다시피 WTO는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결과에 따라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이 새로운 국제기구로 전환한 것이다. 하지만 WTO는 과거 GATT에 비해 법적·기능적 측면에서 현저하게 강화되었으며, 세계실물경제의 흐름을 규율하는 국제무역질서의 형성을 담당하는 강력한 기구가 되었다. 오늘 저는 이러한 국제기구에서 근무하면서 각종 무역규범에 관한 논의와 형성과정을 지켜보고 때로는 직접 참여해 온 사람으로서의 경험과 관점에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한다.

WTO가 발족한지 이제 17개월이 되었다. 출범이후 WTO는 적지 않은 업적을 남겼다고 생각한다. 그동안의 주목할 만한 WTO의 활동으로는 각 회원국들이 우루과이 라운드 합의 사항을 순조롭게 이행하는 좋은 출발을 보였고, 새로운 분쟁해결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회원국이 120개국으로 확대되었으며 현재도 30개국이 WTO가입협상을 진행중이라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여태까지의 WTO 주요 활동은 주로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결과를 정착시키고 일부 미진했던 후속협상의 종결에 집중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회원국들간에 점차 미래의 교역자유화를 위한 의제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러한 의제들은 WTO의 각종 협정내용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협상과제(Built

in agenda)들뿐만 아니라 소위 “뉴이슈” 즉 새로운 통상의제들에 관한 논의를 의미하는 것이다.

금년 12월 싱가폴에서 개최될 제1차 WTO 각료회의에서는 이 문제들에 대한 접근 방법을 둘러싸고 상당한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오늘 저는 일부 회원국이 싱가폴 각료회의의 의제로 채택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새로운 통상의제들, 즉 환경, 투자, 경쟁정책, 노동, 뇌물공여 및 부패방지, 지역주의 등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자 한다.

## 1. 우루과이라운드 협상결과의 이행

WTO 협정으로 대변되는 현재의 광범하고 복잡한 다자통상체제는 세계의 주요 교역국들이 WTO 협정에 가입하고 이에 따른 각종 이행조치들을 성실히 수행하는 것을 그 근간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WTO 협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조치의 이행은 매우 복잡하고 방대한 과제를 모두에게 안겨주고 있다.

우루과이라운드 협상결과를 담고 있는 WTO 협정문은 19개의 협정, 24개의 각료결정문, 8개의 양해록 및 3개의 각료선언, 그리고 무려 24,000페이지에 이르는 회원국들의 관세인하 및 시장접근 약속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런 방대한 협정내용이 담고 있는 각종 통보의무를 충실히 이

행한다는 것은 선진국에게조차도 큰 부담이다. 하물며 경험과 인적 자원이 부족한 대다수 개발도상국들과 새로이 시장경제체제의 진입한 과거 사회주의 국가들에게 있어서 협정이행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 될 것인지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회원국들은 자국의 현행 법령과 관행을 WTO 규정에 일치시켜야만 한다. 몇몇 나라의 경우 크게 고칠 부분이 없거나 약간의 수정을 가하는 것으로 해결될 수도 있다.

그러나 대다수의 국가들은 해당 초 협정에서 규정한 내용의 법령과 제도를 구비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국가들은 반덤핑이나 보조금, 지적재산권 보호와 같이 복잡하고 기술적이며 또 국내에서 격렬한 찬반논쟁을 야기하는 입법들을 해야 되므로 이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다.

우루과이라운드 협상결과의 이행과 관련하여 다른 주요한 점은 회원국들간에 효율적인 상호감시 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WTO의 모든 개별협정별로 위원회가 구성되어 각 회원국들이 행하고 있는 조치들에 대해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상호 검토도 하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위원회들이 제대로 기능하느냐 하는 것은 각 회원국들이 타회원국들의 입법과 조치들에 대해 WTO 협정과 일치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느냐 하는 데에 달려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판단의 근거가 되는 각종 조치의 투명성이 야 말로 상호신뢰를 증진시키고 회원국간 오해를 최소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하겠다. 이러한 투명성은 각 개별협정별로 규정된 통보절차를 통해 구현되고 있다. 대부분의 협정은 회원국들의 현행 법령과 그 개정내용, 그리고 이에 따른 각종 조치들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위원회에 통보토록 의무를 지워놓고 있다. 이러한 통보결과 첫째, 모든 회원국들이 교역상대국의 법령과 제도, 관행과 조치들을 알게 되고, 둘째, 위원회에서의 검토를 통해 각 회원국들이 WTO 관련규정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WTO가 빌坼한 지 1년여가 경과한 현 시점에서 각국의 의무이행 여부와 각종 통보실적을 점검해 보면 약간의 문제점이 있는 게 사실이다. 모든 회원국들이 의무사항들을 완전히 이행하지는 않았고 또 통보의무의 시한, 형식 및 요건들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의무이행에 따르는 엄청난 업무량과 복잡성을 감안할 때 1년치만 보고 성적을 매기기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평가되어야 한다고 본다. 가장 중요한 것은 회원국들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WTO는 개발도상국들을 대상으로 의무이

행을 위한 각종 기술지원 노력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그리고 작년은 첫해임에도 불구하고 각종 위원회들도 행정적으로나 기능면에서 제대로 활동했던 한 해였다. 이와 같이 볼때 각종 통보 절차의 이행 측면에서 WTO의 첫 해는 대체적으로 만족할 만하고 방향을 제대로 잡은("on track") 한해였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 2. 분쟁 해결 절차

새로운 분쟁해결 절차는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이며 국제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 구제조치를 강구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상소 절차도 신설한 바 있다.

WTO 출범 이후 현재까지 35건의 통상마찰이 분쟁해결 절차에 회부되었는데 이것은 과거 GATT의 47년 기간에 비추어 볼 때 엄청난 증가이다.

아직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이를지 모르지만 일단 새로운 분쟁 해결 절차는 잘 작동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분쟁해결 절차에 회부되더라도 패널을 구성하여 판결하는 데까지 가지 않고 양자간 협의를 통해 "법정 바깥"에서 해결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금년 4월말 현재 양자간 협의로 해결이 되지 않아 패널이 구성된 경우는 4건이고, 7건은 양자적으로 이미 해결이 되었으며 나머지는 현재 협의가 진행중에 있다.

분쟁해결 절차에서 발견할 수

있는 또 다른 중요한 점은 개발도상국의 동 절차 활용이 매우 활발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계류 중인 분쟁들의 약 절반이 개발도상국이 관련된 경우이고, 이중의 일부는 개발도상국간의 분쟁도 있다. 이것은 바로 개발도상국들도 자기들의 문제해결을 위해 WTO 체제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과거 통상마찰 문제를 선진국/개도국간의 남북문제로 도식화하여 보던 경향도 불식시켜 주는 계기가 되었다고 본다.

## 3. 지금까지의 협상과 현재 진행중인 협상

WTO는 출범한 이래 한편으로는 새로운 기구의 정비를 해나가면서 또 한편으로는 지속적인 협상의장을 제공해 오고 있다. 그동안 가장 중점적으로 협상이 이루어져 온 분야는 세계경제 전체에 긍정적인 파급효과가 엄청날 몇몇 핵심 서비스분야이다.

작년에 금융서비스분야 협상은 비록 그것이 최상의 결과는 아니었다 하더라도 상당한 내용의 결과를 도출했다. 금융서비스협정은 97년 말에 회원국들이 금융서비스시장 개방일정을 재조정하는 새로운 다자협상을 갖도록 예정하고 있다.

지난달 말까지 종료토록 되어 있던 기본통신서비스 협상은 예정대로 타결되지는 못했지만, 새로 정해진 시한인 97년 2월 15일까

지는 무리없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각국이 이미 협상 과정에서 제출한 양허안들의 내용이 상당히 고무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서 내년에 종료될 예정인 기본통신서비스 협정의 내용은 구체적이고 상당한 시장개방 계획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종료 예정일자가 가장 가까이 다가온 것은 해운서비스협상으로 6월말까지 완결되도록 되어 있다.

여태까지의 해운서비스협상의 진전 속도는 그다지 빠르다고 할 수는 없는데 참여국들이 시한내에 동 협상을 종결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에는 인식을 함께 하고 있으니만큼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또 전문직 인력서비스 준비작업반이 작년 초부터 조직되어 가동중으로 곧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가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

WTO협정을 보면 이미 많은 후속 협상이 예정되어 있어 이를 Built-in agenda라고 부르고 있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협상들은 5년 이내에 재개토록 되어 있는 농산물과 서비스협상, 95년 7월에 개시되어 3년 이내에 종결토록 되어 있는 원산지규정 통일화협상, WTO발족 후 4년 내에 시작할 분쟁해결절차 규정의 재검토에 이르기까지 정말 다양하다. WTO의 각 협정내용에서 이와 같이 미래의 협상내지 검토를 규정하고 있는 조항이 무려 74개에 이른다.

이와 같이 WTO는 많은 분야에

걸쳐 후속협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과거 통상 문제에 대한 다자간 협상이 이루어지던 형식과는 다른 방식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다시 말씀드리면 과거 GATT 시절에는 GATT체제가 다자무역규범을 형성하는 논의의 장으로서 기능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다자간 협상은 매 수년마다 특별히 열리는 ‘××라운드’에서 주로 이루어졌다. 그러한 라운드가 모두 여덟차례 있었고, 아시다시피 그 마지막 라운드가 바로 우루파이라운드였던 것이다.

하지만 WTO체제에서 이런 특별한 라운드가 또 필요할지는 싱가폴 각료회의 또는 그 이후의 각료회의에서 결정되어야 할 사안이다. WTO 각료회의는 매 2년마다 개최키로 되어 있는데, 이같은 회의에서 WTO의제에 대한 검토와 정치적인 결충 등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정례적으로 열리은 각료회의에서는 주로 지난 2년간의 실적을 평가하고 추후 WTO의 작업계획을 승인하는 데 주안점이 두어질 것이므로 과거 GATT시절 주요한 라운드를 개시하거나 종결하기 위해서 열렸던 각료급 회의와는 그 성격이 달라질 것이다.

WTO 출범 이후 첫 각료회의인 싱가폴 회의에서도 대부분의 회원국들은 WTO협정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협정에 이미 예정되어 있는 각종 협상들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것이다.

#### 4. 추가적인 자유화

APEC 국가들은 이미 그들의 우루파이라운드 시장접근 약속을 보다 가속화시킬 준비가 되어 있음을 표명한 바 있다.

미국, 일본, EU와 카나다 등 4대 무역국은 지난달 일본 고베에서 가졌던 통상장관회담에서 정보기술협정(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의 체결을 위한 협상개시를 천명했다. 4대 무역국의 통상장관들은 또 우루파이라운드에서의 관세인하 약속을 더욱 촉진할 가능성을 모색해 보기로 하였고 싱가폴 통상장관회담 개최 전까지 회계서비스 업종의 개방을 위한 작업계획을 가급적 종료키로 합의한 바 있다.

WTO회원국들간에 과연 어떤 분야에서의 추가적인 자유화가 필요하느냐에 대해서는 견해가 갈리고 있지만, 싱가폴 회담에서 허원국들 간에 보다 진전된 시장접근 약속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점차 견해가 일치되어 가고 있는 듯 하다.

##### 1) 무역과 환경

무역과 환경 문제는 이미 싱가폴 각료회의의 의제로 선정되어 있다. WTO협정의 일부인 「무역과 환경에 관한 WTO 각료결정문」에서 이미 「무역·환경위원회」로 하여금 싱가폴 각료회의에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이 보고서에는 지속적인 성장을 촉진시키기 위한 환경과 무역

조치들간의 상호관계와 WTO규정상 개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권고 등이 담겨지게 될 것이다.

‘무역·환경위원회’는 이 복잡하고도 때로는 논란의 소지가 많은 의제에 대해 잘 접근해 왔다. 위원회에서 이루어진 여러 논의는 무역자유화와 환경보호는 많은 분야에서 상호 보완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최종적으로 제출될 보고서의 내용은 아직 분명하지 않습니다만 대체로 첫째, 국내적으로 금지된 물품의 무역 및 무역관련 환경조치들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WTO의 관련 규정 정비, 둘째, 환경친화상표 즉, eco-labelling 부착 프로그램에 대한 통보의무 강화, 셋째, 천연자원 상품의 교역제한에 대한 일부완화조치, 넷째, 다자간 환경협정에 근거한 차별적 무역제한 조치와 WTO규정과의 관계 등에 대한 권고안들이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무역·환경위원회’는 싱가폴회의 이후에도 계속 가동될 것이 확실하다. 왜냐하면 농업보호와 환경, 에너지보호와 환경 그리고 지적재산권과 환경정책과 같은 매우 예민한 문제들에 대해서 이번 싱가폴 회의에서는 현재까지의 논의진행 경과 정도만 보고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환경 외에 비록 아직 채택 여부가 합의되지는 않았지만 잠정의 제로 거론되고 있는 뉴이슈들은 무역과 투자, 경쟁정책, 노동, 농물공여 및 부패방지 그리고 지역

주의 문제 등이 있다.

이러한 과제들이 WTO에서 어떻게 다루어지느냐 하는 것은 미래의 세계교역질서 형성에 있어 매우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

뉴이슈의 채택을 주장하는 국가들은 세계경제의 지구촌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차세대의 핵심 통상현안으로 등장할 것이 분명한 이러한 주제들에 대해 WTO가 실기하지 않고 빨리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고 한다. 반면 채택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는 국가들은 그러한 새로운 과제들에 대한 논의를 하다보면 WTO의 본연의 임무라고 할 수 있는 우루파이라운드 이행의 점검과 이미 예정되어 있는 각종 협상의 진행에 소홀해질 수 밖에 없다고 본다.

또한 일부국가가 보호주의 정책의 새로운 구실로 이러한 뉴이슈들을 이용하려 할지도 모른다는 의구심이 가슴 속 깊이 자리잡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 2) 무역과 투자

최근 들어 가속화되고 있는 세계경제의 통합현상을 야기하고 있는 가장 큰 요인은 외국인 직접투자일 것이다. 외국인직접투자는 경제의 지구촌화를 촉진시키고, 전 세계에 거쳐 자본, 기술, 경영 노하우, 무역기회 및 고용창출기회를 광범하게 확산시키고 있다. 이런 현실이나만큼 무역과 투자와의 관계도 그것을 대체관계로 보기보다는 상호보완하는 것으로 파악하는 추세이다.

외국인직접투자의 가장 큰 부분은 OECD국가간의 상호투자이다만 개발도상국에 대한 외국인투자의 비중도 점차 높아져 가는 추세이다.

이를 수치로 살펴보면 1987~1991년간 평균 18%에 불과했던 개도국에 대한 외국인투자는 1994년에는 37%로 대폭 늘어났다.

외국인투자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고 차별적 조치가 행해지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는 강력하고도 일관성있는 국제규범이 필요하다는 데는 넓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 최근 전례없이 많은 숫자의 쌍무투자조약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협약하는 약 900여개의 쌍무투자조약의 약 60%가 90년대에 들어와 체결된 것이다.

개발도상국이 쌍무투자조약의 일방 또는 양 당사자가 되는 경우도 점점 증가하고 있다. 유럽연합이나 NAFTA 같은 지역협정에는 이미 투자에 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또 OECD에서도 1997년도 중반 타결을 목표로 「다자간 투자협정」 협상이 진행중에 있다. 이렇게 양자, 지역 그리고 다자간에 투자에 관한 국제규범을 만들고자 하는 노력은 물론 환영할 만한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여러 갈래로 이루어지고 있는 투자에 관한 논의가 과연 얼마나 그 규범을 실제 필요로 하고 있는 기업의 요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은 의문이다. 범세계적으로 통용

될 진정한 의미에서의 투자에 관한 다자협정이라면 WTO에서 협의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강력히 대두되고 있다.

WTO에서도 투자에 관한 논의가 전혀 새로운 것은 아니다. 「WTO서비스협정」은 외국시장에서의 법인 또는 개인기업의 설립 권리와 이들에 대한 대우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지적재산권협정」에는 외국기업과 개인의 지적재산권 보호에 관한 규정이 있고, 「무역관련투자협정」은 국내부품 조달의무 비율과 같이 무역왜곡효과를 초래하는 투자정책을 금지하고 있다.

무역과 투자가 점차 상호보완적인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는 현실에서 무역과 투자를 함께 규율할 다자규범이 없다는 것은 단추가 제 구멍을 찾지 못한 것 같은 느낌이다. 지금 OECD나 지역협정 등에서 진행되고 있는 투자에 관한 논의는 WTO의 서비스협정이나 지적재산권협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투자에 관한 내용들과 일부 중복되고 있다.

문제는 이렇게 여러가지 시각에서 중복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투자에 관한 논의를 사전에 거를 수 있는 장치가 없으므로, 자칫하면 규정간의 내용 불일치라든지 분쟁 해결 절차의 복잡화, 협정 비참여 국가에 대한 차별조치 등 부작용이 초래될 수도 있다는 데 있다.

외국인직접투자와 관련해 또 한 가지 깊고 넘어가야 할 점은 이 문제가 과거 60년대와 70년대 첨

예한 남북문제의 최대 쟁점이었던 것에 비추어 이제는 남북대치적 구도에서 벗어나고 있다고 생각된다.

다행히 이제는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이 문제에 대해 신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으므로 투자와 관련해 범세계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공동의 규범을 만드는 것이 가능해졌다고 본다. 이를 토대로 개발도상국의 입장도 활발히 개진될 수 있도록 하면서 WTO가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투자문제에 대한 논의를 개시해야 한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견해이다.

### 3) 무역과 경쟁정책

무역자유화와 경쟁정책은 모두 공개된 시장과 왜곡되지 않은 경쟁을 촉진시키고자 한다는 점에서 지향하는 바가 같다.

GATT시절에는 주로 국제무역을 왜곡하거나 제한하는 정부조치들에 대해서 많이 다루어졌다. 이 분야의 조치들이 국제 규범에 맞춰 많이 정리되자 이제는 민간분야의 관행들로서 유사한 왜곡효과를 갖고 있는 것들에 대해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경쟁정책도 WTO에서 새로이 등장한 개념은 아니다. 과거 하반기 현장에는 이미 제한적인 기업관행(RBP)에 대한 별도의 장이 마련되어 있었다. WTO 「서비스 협정」과 「지적재산권협정」에는 반경쟁적 관행의 통제에 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반덤핑협정」에서의 불공정가격이라는 개념도 반경쟁적이라는 점에서 경쟁 정체과 관련이 있다.

비스 협상에서도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우월한 지위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세이프가드 조항이 논의되어 왔다.

또 최근에는 일본의 자동차시장과 사진필름시장의 유통구조와 기업관행이 불공정하다고 해서 미·일간의 무역분쟁이 일어나기도 했다.

그럼 WTO는 경쟁정책과 관련하여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까요? 어떤 특정사안이 경쟁정책과 관련되어 문제가 되었을 때 WTO는 개별 사안별로 이 문제를 다루는 방법과 아니면 무역과 경쟁정책 문제의 본질을 파고들어 양자간의 관계를 검토한 후 다자협정의 틀을 마련하는 방법이 있는데 물론 후자의 방법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현재 경쟁정책과 관련된 국제협력에는 두 가지 접근방법이 있는 것 같다.

첫째는 국가간 경쟁정책 분야에서의 협조는 쌍무협정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주로 절차적인 사항들에 대한 협조를 중진시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1995년에 체결된 미국과 EC간의 협정에 따르면 어느 일방의 이익이 상대방 영토 내에서의 반경쟁적 관행 때문에 중대한 침해를 받았다면 상대방에게 그러한 관행들을 검토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두번째 방법은 반독점에 관한 쌍무 협조는 지역협정과 같은 쌍무 차원 이상의 규범과 분쟁해결 절차를 통해 보완되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NAFTA에서는 각 나라가 반경쟁적 사업행위를 규정하고 지역내에서 경쟁관련법들이 충실히 집행될 수 있도록 협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호주-뉴질랜드 경제 유대협정」은 양국의 경쟁법에 유사한 내용이 담기도록 하고 양국의 경쟁촉진기관간 정보교환과 협조체계를 공고히 하도록 하고 있다.

개발도상국들도 싱가폴 각료회의에서 무역과 경쟁정책을 논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비교적 호의적인 것으로 보인다. 과거에 개발도상국들은 GATT에서 제한적 기업관행을 논의할 것을 강력히 주장한 바 있기 때문이다. 개발도상국들은 이 문제를 「제한적 기업관행의 통제에 관해 다자간 합의된 원칙과 규범」이라는 긴 이름으로 주로 UNCTAD에서 논의를 계속해 왔고 이번에 열린 UNCTAD 제9차 총회에서도 이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 어떤 개발도상국은 경쟁정책 문제에서 WTO의 반덤핑규정까지 포함하여 논의되어야 한다고까지 주장한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경쟁정책에 관한 접근방법은 매우 다양하므로, WTO가 경쟁정책 전반을 규율하는 구속력 있는 규범을 협상하기에는 아직 너무 이른 감이 든다. 우선 경쟁정책의 여러가지

이슈들을 분명히 하고 가능한 접근방법들에 대해 의견수렴이 더 있어야 한다. 따라서 앞으로 이 문제를 국제규범으로까지 발전시키느냐 여부에 너무 구애받지 말고 1단계로 WTO내에서 이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싱가폴 각료회의에서 이 분야에 대한 어떤 작업이 개시되는 것으로 결정되더라도 그것은 논의의 초기단계, 즉 탐색적 성격의 것에 그칠 가능성일 것이다.

#### 4) 무역과 노동문제

이 문제처럼 처음부터 격렬한 논쟁에 휘말린 사안도 드문 것 같다. 이 문제는 ILO, OECD, NAFTA 그리고 미국과 EU의 GSP공여계획 등과 관련되어 논의가 있어 왔다. 우루과이라운드 아래 이 문제는 OECD국가들의 실업률 상승과 국가간, 임금격차 등과 연계되어 더욱 논쟁이 가열되어 왔다. 논쟁의 촛점은 몇가지 노동조건들은 기본적인 인권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나라들이 반드시 일정한 노동기준을 준수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최근 OECD에서 발간한 「무역과 노동기준」이라는 보고서는 무역과 핵심적인 노동기준간의 관계에 대해 확실한 결론을 도출해 내지 못하고 있다. 그 보고서에 따르면 첫째, 복지는 그 경제 내의 노동기준의 성격과는 무관하게 무역의 자유도에 비례하는 것이고, 둘째, 전반적인 교역구조가 노동기준의 이행여부에 따라 결정되지

는 않으며,셋째, 낮은 노동기준을 가지고 있는 국가가 높은 노동기준의 국가보다 더 효율적인 교역국이라 볼 수는 없고, 넷째, 핵심노동기준을 보장할 경우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국제경쟁력도 약화될 것이라는 개발도상국의 우려도 근거가 없다는 것들이었다.

이 문제에 관한 논의는 대단히 혼란스러울 정도이다. 무역과 노동을 연계시켜야 한다는 주장의 요지는 이렇다. 최소한의 노동기준을 강제하지 않을 경우 이것은 불공정한 경쟁력으로 귀결되거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므로, 이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일방적인 무역제한 조치를 가하라는 정치적 압력이 가중될 것이라는 주장들이 있다. OECD국가들은 대부분 싱가폴 각료회의에서 무역과 노동문제에 대한 작업계획을 시작할 수 있기를 원하고 있다. 미국은 우루과이라운드의 초기협상때도 이 문제를 의제에 포함시키려다가 관철하지 못했던 경험이 있는데 지금도 노동문제에 대해 가장 강경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미국의 「우루과이라운드협정 이행법」은 대통령으로 하여금 WTO내에 무역과 노동문제의 상호관계에 대한 검토를 하기 위한 작업반 구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국, 일본, EU, 캐나다의 4대국 통상장관들은 이 문제를 향후 어떻게 진행시킬지 결정하기 위해 싱가폴 각료회의에서 반드시 다뤄져야 한다고 주장

하고 있다.

반면 연계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무역과 노동을 연계할 만한 어떠한 경험적 증거도 없다, 노동기준에 관한 문제라면 ILO에서 얘기가 되어야지 왜 무역제재조치가 따르는 WTO에서 논의를 해야 되느냐, 무역제재조치를 통해 이행을 보장코자 한다면 보호주의적 세력에 의해 남용될 소지가 크다.

그리고 현실여건을 무시하고 기준을 상향조정함으로써 경제성장이 하락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개발도상국이 잘 살게 되는 기회가 봉쇄됨으로써 장기적으로 국부형성을 통한 높은 수준의 노동조건으로 상향조정되는 것이 오히려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개발도상국들은 WTO가 인권문제를 다룰 경우 보호주의적 무역제재조치와 연결될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몇몇 국가들은 이 문제가 무역과 이민정책간의 문제와도 연결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싱가폴 각료회의에 이 문제가 의제로 채택될지 전혀 불투명하다. 무역과 노동문제는 아마도 WTO회원국들을 아직도 남북간 대치국면으로 나누고 있는 유일한 문제일지도 모르겠다.

이 문제를 WTO에서 채택할 수 있기 위해서는 OECD국가들이 무역과 노동기준과의 관계는 분리할 수 없는 문제라든 것을 분석적이고도 실증적인 연구를 통해 입증시켜 개도국을 설득할 때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5) 무역과 뇌물공여 및 부패 방지

최근 미국은 WTO가 뇌물공여 및 부패방지 문제에 대한 작업을 시작할 것을 요청하였다.

미국은 제1단계로 일단 WTO 회원국들 간에 정부조달에 있어 공개되고 적절한 절차 및 투명성이 보장되는 잠정 협정을 체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의 논리는 뇌물과 부패가 만연되어 이것에 결국 통상협상의 결과를 제대로 향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통상문제를 다루는 WTO에서 이 문제도 다뤄야 한다는 것이다. WTO 사무총장은 지난 4월 24일 상기풀에서 이 문제는 논의해 볼 가치가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

주요 4개국 통상장관들도 지난 4월 고베회의에서 미국 입장을 추인했고 WTO 정부조달협정의 가입국 확대를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다. 미국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다른 WTO 회원국들의 입장표명은 아직 없었다.

1996년 1월 1일부터 발효된 새로운 정부조달협정은 과거 협정에 비해 국제경쟁에 공개되는 정부조달시장 규모를 10배나 키웠고 조달과정에서의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특히 주안점을 두었다. 하지만 현재 이 협정은 가입국이 제한되어 있는 복수국가간 협정으로 남아 있다. 싱가폴 회의에서는 이 협정을 다자협정으로 전환하고 그

적용범위도 전 분야로 확대시키는 문제가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부패방지를 위한 논의는 이미 OECD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OECD의 논의는 세 가지 분야에 집중되어 있는데 즉 뇌물공여 및 부패를 형사처벌하는 것, 뇌물공여액에 대해 세액공제혜택을 없애는 것 그리고 조달과정에서의 부패방지 등이다. 미국이 역시 이 분야에서의 논의에 앞장서고 있다. 미국은 「대외부패방지법」을 통해 미국시민이 외국관리에게 뇌물을 공여했을 경우 처벌하는 유일한 국가이다.

OECD이사회는 1994년 4월 「국제사업거래상의 뇌물에 관한 권고안」을 채택했다. 비록 이것은 구속력이 없는 권고안에 불과하지만 외국 관리에게 뇌물을 주지 않도록 회원국들에게 요구하는 최초의 정부간 협정이다. 이 협정은 회원국들로 하여금 뇌물공여금지를 위해 민사법, 형사법, 세법 등 각종 규정을 검토하고 만일 뇌물공여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제재로서 당사자가 정부조달계약이나 기타 공공보조 등 수혜를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 협정의 시행은 「국제투자 및 다국적기업위원회」 산하의 「국제사업거래상 뇌물공여에 관한 작업반」에서 점검하고 있다.

금년 5월 중에는 OECD 「재정 위원회」에서 제2차 권고안을 준비할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내용은 회원국들이 뇌물로 밝혀진 금액이 세액공제가 되지 않도록

세법개정을 요구하는 내용이 될 것이다. 이 밖에도 국제상공회의소나 국제엔지니어 연맹같은 민간 단체에서도 뇌물금지와 부패방지에 대한 행동강령을 채택하고 있다.

미국 제안의 자세한 내용은 아직 확인하기 어렵다. 한가지 분명해 보이는 것은 뇌물공여금지나 부패 방지라는 것이 개념적으로는 누구나 반대할 수 없겠지만 이 문제가 무역과 결부되었을 때 과연 얼마나 명확하고 입증할 수 있으며 또 효과적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에 이르면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 6) 지역주의

1992년 이래 체결된 지역무역 협정이 30개를 넘고 있으며 앞으로는 대륙적 차원에서의 지역협정이 더욱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미주 대륙국가들이 2005년을 목표로, APEC국가들은 2020년까지, 아프리카 국가들이 2025년까지 그리고 EU는 지중해 국가들 및 남미의 메르코수 국가들과의 자유무역협정체결을 진행중에 있다.

다자무역체제의 근간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지역주의에 대해 보다 분명한 원칙이 제시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어떻게 하면 다자주의와 지역주의가 상호 보완적인 방향으로 유도될 수 있도록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일반적으로는

지역주의가 다자주의와 상충된다  
기 보다는 보완되는 점이 많고,  
다자협상에서는 논의하기 어려운  
새로운 의제들에 대한 선도적 논  
의를 담당하는 측면도 있다. 하지  
만 그렇다고 해서 현존하는 지역  
무역협정들이 다자규범과 일치하  
느냐 하는 것은 사실 결론을 내리  
기 어렵다.

즉 여태까지 GATT와 WTO에  
보고된 100개의 협정중에서 어떤  
지역 무역협정도 GATT 24조에  
위배된다는 판단이 내려진 적은  
없지만, 반면에 적극적으로 GA-  
TT 24조에 합치된다고 한 경우  
는 그 많은 지역무역협정 중 단 1  
건에 불과하다.

WTO회원국들의 지역무역협정  
에 대한 인식은 그들이 그 지역무  
역협정의 회원국이냐 아니냐에 따  
라서 다르다. 당사자로 참여하는  
국가들은 GATT 24조와의 합치  
를 주장하지만, 비당사자인 국가  
들은 무역전환효과라든지 역외국  
에 대한 차별조치의 가능성 등을  
역설하게 된다.

GATT 24조는 손질이 필요한  
규정이다. GATT 24조에서는 관  
세동맹이나 자유무역지대는 '실질  
적으로 모든 무역'을 포함해야 하  
고 무역장벽은 '전체적으로 그 전  
보다 높거나 더 제약적이 되어서  
는 안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문의 해석을 둘러싸  
고 여러 가지 다른 의견이 나올  
수 있고 앞으로도 계속 논란거리  
로 남게될 것이다. 몇몇 회원국들

과 학계에서는 GATT 24조의 내용을 지역무역협정의 역외국에 대한 차별효과를 최소화라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그들 주장은 GATT 24조의 내용이 첫째, 관세동맹회원국들은 동맹이전에 공여되었던 최저 관세 수준을 유지해야 하고 둘째, 자유 무역지대는 상대적으로 환화된 원산지규정을 운영해야 하며 셋째, 관세동맹과 자유무역지대는 그가입이 자유로워야 한다는 것 등이다.

금년 2월 WTO에는 「지역무역 협정위원회」가 신설되어 모든 지역무역협정들을 검토하고 지역주  
의와 다자주의간에 체제적인 문제  
들에 대해 검토할 권한을 부여받았다.

이 위원회가 설치됨으로써 현존하는 각 지역협정들이 과연 다자 규범과 일치하는지를 다시 검토해 보고 만일 현행 지역협정규정 중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재 협상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지역주의에 일정한 규율을 도입함으로써 다자 무역체제의 근간을 위태롭게 하지 않도록 하자는 이러한 노력의 성공여부는 결국 다자주의를 건전하고 강력하게 지켜나가고자 하는 국가들의 적극적인 의지에 달려 있다고 하겠다.

## 5. 결 론

WTO의 출범 첫 해인 작년 1

년동안 세계무역은 물량으로는 8%, 금액기준으로는 19%의 성장을 기록했다.

또한 대부분의 교역은 교역당사국간에 큰 마찰을 야기하지 않으면서 이루어졌다. 개발도상국들과 구 사회주의 국가들의 세계경제로의 편입은 계속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다자무역체제는 최근 어느 때보  
다도 건전하다고 생각되지만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과제는 많다. WTO  
협정의 충실히 이행을 지켜봐야  
하고 싱가풀 각료회의와 그 이후  
에 등장할 새로운 의제들에 대해  
건전하고 이성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이제 싱가풀 각료회의 준비가  
본격화되고 있다. 이 회의는 우루  
과이라운드 협상결과를 더욱 공고  
히 하고 그 이행을 더욱 확실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 회의가 성공적이 되기 위해  
서는 모든 WTO회원국들의 이익  
을 반영하는 균형잡히고 합의된  
의제를 도출해 내야만 한다. 물론  
무역자유화를 가속화시키고 다자  
무역체제를 강화하는 일은 싱가풀  
회의 이후에도 계속될 것이다. 저  
는 우리나라가 다자무역체제에서  
날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국  
가로서, 이러한 노력을 강력히 지  
지해 줄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공  
헌을 하게 될 것으로 굳게 믿고  
있다.